KOSCA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

수신 : 회원제위

참조 :

제목 : 하도급법 사각지대 건설분쟁 「수·위탁 분쟁조정제도」 안내

---

1.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건설위탁의 경우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은 **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45억 원 이상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에 한하여 적용됨에 따라,**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회원사는 하도급법에 따른 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등 피해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.

※ '25년 시공능력평가 기준 종합건설사업자 16,937개사 중 7,397개사(43.7%)가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

3. 이에,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지원하고자 **「수·위탁 분쟁조정제도」**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다 음

○ 주요내용

구 분	주 요 내 용
근거 법령 및 기관	· 「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8조의5에 따라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에 설치·운영
조정 대상 및 사례	·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거래 중 「상생협력법」상 수·위탁거래에 해당하는 분쟁 - ❶원사업자 시공능력평가액 45억 원 미만이거나, ❷원사업자 연간 매출액이 수급사업자보다 적은 경우 (공사대금 미지급, 부당감액 등 분쟁)
조정 비용·효력	· 수수료 무료 · 법정 요건 충족 시, 조정서에 민사상 집행력 부여
신 청 방 법	· 중소기업 수·위탁거래종합포털((www.smes.go.kr/poll) 접속 → 【불공정거래 상담 및 분쟁조정 신고】
문 의 처	· 수·위탁분쟁조정협의회 사무국 ☎.1357 (내선 9) · 협회 불공정하도급상담센터 ☎.02-3284-1026

붙　　임　1. 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협조 요청 공문 1부.
2. 수위탁 분쟁조정제도 안내 리플렛 1부.
3. 수위탁 분쟁조정신청서 양식 1부. 끝.
※ 협회 홈페이지(https://chungbuk.kosca.or.kr/)- 공문, 공지사항 No.5992참조

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
회　장　류　근　형

담당자 주임 이재한 과장 고민숙 실장 하재종
시행 전건협 충북 제684호 (2026.10.28)
우 2877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 16(용암동) 전문건설회관 7층/https://chungbuk.kosca.or.kr/
전화 043-294-7671 전송 043-294-7675 / 전자우편 bokil@kosca.or.kr